주요 시설 · 활동 조치사항

☑ 중점관리시설

〈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 〉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>1단계</th><th>1.5단계</th><th>2단계</th><th>2.5단계</th><th>3단계</th></tr>
<tr><th>생활방역</th><th colspan="2">지역 유행 단계</th><th colspan="2">전국 유행 단계</th></tr>
<tr><td>유흥시설
5종</td><td>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인원 제한</td><td>▲춤추기, 좌석 간 이동 금지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</td><td colspan="3">집합금지</td></tr>
<tr><td>방문판매
직접판매
홍보관</td><td>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</td><td>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4㎡당 1명 인원 제한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</td><td>▲8㎡당 1명 인원 제한
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노래·음식 제공 금지</td><td colspan="2">집합금지</td></tr>
<tr><td>노래
연습장</td><td>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</td><td>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</td><td>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▲음식 섭취 금지
▲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</td><td colspan="2">집합금지</td></tr>
<tr><td>실내
스탠딩
공연장</td><td>▲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td><td>▲음식 섭취 금지
▲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td><td>▲21시 이후 운영 중단
▲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 두기</td><td colspan="2">집합금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식당·카페
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)</td><td>▲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150㎡ 이상)</td><td>▲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/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</td><td>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
▲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</td><td>▲8㎡당 1명 인원 제한 추가
▲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
▲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·배달만 허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(뷔페의 경우)
▲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▲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td></tr>
</table>

※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, ② 출입자 명단 관리, ③ 환기·소독 등 수칙 의무화

*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·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